

불임1 채용분야별 직무설명서

직무설명서: 운영직

직무설명서: 전기직

직무설명서: 통신직

채용분야	기계직	분류체계	대분류	09. 운전·운송	20. 정보통신	
			중분류	02. 철도운전·운송	02. 통신기술	
			소분류	02. 철도시설유지보수	01. 유선통신구축	
			세분류	03. 역시설물유지보수 04. 철도정보통신시설물 유지보수	03. 네트워크구축	
기관주요사업	○ 국내·외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 역세권 개발, 복합환승센터 개발, 환승시설의 설치 운영, 대중교통체계 개선,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설치운용, 기타 수익사업 등					
직무수행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시설물유지보수) 교통카드 발매·충전기/교통카드 개집표기/교통카드 정산·환급기/역 전산기/승차권 발매·발권기 등 역무자동화설비를 유지보수하며 역에서 집계된 운임·통계 데이터를 수집·전송하며 각 카드사에서 정산된 데이터의 검증작업 등을 수행함. ○ (철도정보통신시설물 유지보수)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도시철도 유무선 통신설비 시설물에 대한 기능 확보와 원활한 통신설비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사고장애복구, 운영 및 관리업무 수행 ○ (네트워크구축)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도시철도 건설관련 유무선 통신설비 시스템 기획, 계획, 설계, 발주, 공사, 감리 등 관련업무 수행 					
전형방법	○ 입사지원 → 필기시험 → 인성검사 → 면접시험 → 신체검사·결격조회 → 임용후보자교육 → 임용					
일반요건	연령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	성별	무관	
능력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시설물유지보수) 01. 일상점검 14. 역 통신시설물 안전관리 03. 역무자동화설비 유지보수 04. 역무통신설비 유지보수 12. 고장원인 분석기반 ○ (철도정보통신시설물 유지보수) 0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계획수립 02. 정보통신 안전관리 03. 통신선로설비 유지보수 12. 광전송설비 유지보수 13. 광전송설비 유지관리 05. 디중호설비 유지보수 06. 교환설비 유지보수 14. 정보통신망설비 유지보수 15. 정보통신망설비 유지관리 08. 영상감시설비(CCTV) 유지보수 09. 무선설비(VHF) 유지보수 18. 무선설비(TRS) 유지보수 19. 무선설비(TRS) 유지관리 20. 통신용 전원설비 유지보수 21. 통신용 전원설비 유지관리 16. 무선설비(LTE-R) 유지보수 17. 무선설비(LTE-R) 유지관리 22. 통신용 기타부대설비 유지보수 23. 통신용 기타부대설비 유지관리 ○ (네트워크구축) 01. 네트워크사업기획 02. 네트워크구축계획 03. 네트워크구축설계 04. 네트워크공사발주 05. 네트워크구축공사 06. 네트워크품질시험 07. 네트워크구축감리 08. 네트워크운용관리 09. 네트워크유지보수 10. 네트워크보안관리 11. 인터넷설비 설계 12. 근거리통신망(LAN) 설계 13. L2·L3 스위치 구축 14. 무선랜 구축 15. 서버구축 16. 지중관로공사 17. 가공선로공사 18. 구조물 설치공사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시설물유지보수) 운임징수시스템 동작원리, DATA 생성 및 통신 역무자동화설비 점검·정비 절차, 안전수칙에 관한 지식, UPS 동작원리 및 시험원리, 전자공학, 통신공학, 전산기 점검·정비 절차, 네트워크 구조, UNIX, 데이터베이스(ORACLE,SQL), JAVA PROGRAMMING, 컴퓨터공학, 프로그램에 관한 지식, 안전수칙에 관한 지식 ○ (철도정보통신시설물 유지보수) 통신이론, 정보통신공학,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정보통신설계 정보통신설비 기술 기준에 대한 지침 및 지식, 통신선로·광전송설비·교환설비·정보통신망 설비·영상감시설비(CCTV)·무선설비(VHF, TRS, LTE-R)·통신용 전원설비 관련 지식 등 ○ (네트워크구축) 정보통신 관련 설계기준 및 법규지식, 네트워크 지식, 도면의 이해 및 법규지식, 정보통신망의 발전방향, 동향 지식 등 					
필요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시설물유지보수) 각종 유지보수용 점검 장비 및 계측기 사용 기술, 유지보수용 점검 방법 및 관리기술, 도면·회로도 분석 능력, 설비별·부품별 규격과 정상범위 판단 능력, 전산기 운영 기술, H/W 조작 기술,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도, 데이터베이스 조작능력, 네트워크 제어 기술 등 ○ (철도정보통신시설물 유지보수) 통신이론·정보통신공학·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정보통신설계·정보통신설비 기술 기준에 대한 지침 및 지식, 통신선로·광전송설비·교환설비·정보통신망 설비·영상감시설비(CCTV)·무선설비(VHF, TRS, LTE-R)·통신용 전원설비 관련 지식 등 ○ (네트워크구축) 네트워크 구축 법령에 대한 이해 능력, 핵심 설계기준과 설계범위 도출능력, 네트워크 기본시설 및 구축현장 파악능력 등 					
직무수행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적극성, 정확한 회로분석을 위한 관찰력과 성실성,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타 분야 직원과의 협력적인 태도, 안전사고 예방을 우선시하는 태도 ○ 규정·법규·기술기준·안전수칙 준수, 관련업무 및 작업에 임하는 성실한 태도, 점검 및 사고장애복구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적극적이고 신속한 고장처치를 수행하는 태도 					
직업기초능력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정보능력					

불임2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등) 중 ‘직원의 결격사유’

제60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불임3 부산교통공사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

제2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0. 채용 관련 비위행위로 합격한 사람
11. 비위채용자로 적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붙임4 필기시험 단계 가산점 부여 대상 자격증 종류

응시직렬	가산대상		가산비율
	자격구분	자격증	
전 직렬	전문자격증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5%
	기사	산업안전, 빅데이터분석	3%
	산업기사	산업안전	3%
	철도관련	철도교통관제사	3%
운영직	기타	컴퓨터활용능력(1급)	3%
전기직	기술사	건설안전,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산업계측제어, 산업위생관리, 소방, 인간공학, 전기안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전자응용, 철도신호, 화공안전	5%
	기능장	전기, 전자	5%
	기사	건설안전, 舊반도체설계, 대기환경, 전자, 산업위생관리, 전자계산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인간공학,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3%
	산업기사	건설안전, 반도체설계, 대기환경, 전자, 산업위생관리, 철도신호,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전자계산기제어	3%
통신직	기술사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5%
	기능장	전자, 통신설비	5%
	기사	무선설비, 舊반도체설계, 방송통신, 전자계산기, 의공, 임베디드, 전자,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파전자통신, 정보보안, 정보처리, 정보통신	3%
	산업기사	무선설비, 반도체설계, 방송통신, 사무자동화, 의공, 전자, 통신선로, 전자계산기제어, 정보보안,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정보통신	3%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통폐합 포함)은 가산 대상 자격으로 인정됨.

불임5 입사지원서 내 인적사항 기재 불가 관련

부산교통공사는 응시자의 학력, 연령, 가족관계, 신체조건, 출신학교, 종교 등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일절 배격하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자는 편견이 개입될 수 있거나 개인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입사지원서에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고 개인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기소개서 내 인적사항 기재 관련 위반 기준 및 예시

구분	위반기준	블라인드 위반 예시
성명	입사지원서 성명 기재란 이외의 란 (자기소개서 등)에 성명 기재	“제 이름은 <u>김부교공</u> 입니다.” “저는 온화한 성품 덕에 테레사 <u>박</u> 이라 불립니다.”
연령	생년 및 연령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 직·간접적 기재	“제가 <u>올해 26살이 되면서</u> 다짐한 것은 ---” “ <u>10년 전</u> 중학교에 갔 <u>입학</u> 했던 저는 ---”
출신지역	출생지 및 출신지 직접적 기재	“저는 25년차 <u>양산</u> 토박이로서 ---” “ <u>김해</u> 마당발이라는 별명처럼 친화력이 ---”
가족관계	가족 및 친인척의 신분 관련 정보 직·간접적 기재	“ <u>부산교통공사</u> 에 근무하시는 아버지는 ---” “ <u>창원시</u> 소속 공무원이셨던 어머니는 ---”
출신학교	출신학교명 직·간접적 기재	“ <u>부교공대학교</u> 단과대 회장으로 ---” “ <u>금정산과</u> 가까웠던 학교에 다니면서 ---”
신체조건	본인의 신체조건 및 특징 직·간접적 기재	“저는 <u>180cm의 큰 키</u> 덕에 ---” “ <u>체지방률 10%</u> 대의 꾸준한 관리로 ---” “ <u>큰 점</u> 으로 인한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
경력	학교명, 지역명, 특정단체(기관)명 직접적 기재	“ <u>부교공대학교</u> 연구실에서 조교 경험을 ---” “ <u>부산시청</u> 에서 근무하면서 ---” “ <u>서울행복공사</u> 청년인턴이었던 저는 ---”

직무경력 관련 처리 및 기타 유의사항

- **직무경력:** 경험·경력 기술 시 OO공사, OO전자, OO연구원, OO시청과 같이 입력 가능
- **기타 유의사항:** 입사지원서 내 이메일 주소 입력 시 학교명 또는 특정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주소를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

붙임6 전공과목 내 ‘전공’ 부문 출제범위

직렬	전공과목	출제범위
운영직 (택1)	행정학	행정학원론, 정책학, 조직이론, 인사행정, 재무행정, 지방행정
	경영학	경영학원론, 인적자원관리, 생산관리, 마케팅원론 (재무관리, 회계학 미포함)
	경제학	경제학원론,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국제경제학 포함)
전기직	전기일반	전기자기학, 전력공학, 전기기기,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전기설비기술기준
통신직	통신일반	정보통신네트워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일반, 디지털전자회로, 무선통신기기, 안테나엔지니어링

❖ 출제범위는 본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 이상의 출제범위 관련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붙임7 전공과목 내 ‘관계법령’ 부문 출제범위

1-1 지방공기업법(2025. 4. 1. 시행)

구분	해당(관련)조항	출제
제1장 총칙	§1 ~ §4	O
제2장 지방직영기업	§5 ~ §48	X
제3장 지방공사(제1절~제5절)	§49 ~ §75의6	O
제4장 지방공단	§76 ~ §77의2	X
제4장의2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등	§77의3 ~ §77의7	X
제5장 보칙	§78 ~ §80의2	O
제6장 벌칙	§81 ~ §85	O

1-2 지방공기업법 시행령(2025. 1. 31. 시행)

구분	해당(관련)조항	출제
제1장 총칙	§1 ~ §2의2	O
제2장 지방직영기업	§3 ~ §46	X
제3장 지방공사, 지방공단	§47 ~ §67	O
제3장의2 공사공단·지방공단외의 출자법인 등	§67의2 ~ §67의3	X
제4장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68 ~ §75	O
제5장 보칙	§76 ~ §79	O
[별표 1]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해야 하는 공사	§57의9	O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 법령 출제범위 해당 과태료만 포함	§79	O

2-1 도시철도법(2024. 1. 9. 시행)

구분	해당(관련)조항	출제
제1장 총칙	§1 ~ §4	O
제2장 도시철도의 건설	§5 ~ §25	O
제3장 도시철도운송사업 등	§26 ~ §43	O
제4장 보칙	§44 ~ §46	O
제5장 벌칙	§47 ~ §50	O

2-2 도시철도법 시행령(2025. 1. 1. 시행)

구분	해당(관련)조항	출제
법령 위임(근거) 조항	§1 ~ §29	O
[별표 1] 입체이용저해율의 산정기준	§10	X
[별표 2]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대상별 매입금액의 범위	§14	X
[별표 3]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24	O

3-1 철도안전법(2025. 1. 31. 시행)

구분	해당(관련)조항	출제
제1장 총칙	§1 ~ §4	O
제2장 철도안전 관리체계	§5 ~ §9의5	O
제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10 ~ §24의5	O
제4장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관리	§25 ~ §38의15	X
제5장 철도차량 운행안전 및 철도보호	§39 ~ §50	O
제6장 철도사고조사·처리	§60 ~ §61의3	O
제7장 철도안전기반 구축	§68 ~ §72의2	X
제8장 보칙	§73 ~ §77	O
제9장 벌칙* * 법령 출제범위 해당 부분만 포함	§78 ~ §83	O

3-2 철도안전법 시행령(2024. 9. 27. 시행)

구분	해당(관련)조항	출제
법령 위임(근거) 조항* * 법령 출제범위 해당 조항만 포함	§1 ~ §21의5, §30 ~ §58, §61 ~ §64	O
[별표 1] 안전관리체계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6	O
[별표 1의2]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내용	§12의2	O
[별표 1의3]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기준	§21의2	O
[별표 2]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25	X
[별표 3]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27	X
[별표 4] 철도차량의 운행제한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29의2	X
[별표 4의2] 인증정비조직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29의3	X
[별표 4의3] 정밀안전진단기관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29의4	X
[별표 4의4]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	§30의2	X
[별표 5]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기준	§60	X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 * 법령 출제범위 해당 과태료만 포함	§64	O

붙임8 철도안전법 신체검사 기준(「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2])**신체검사 항목 및 불합격 기준(제12조제2항 및 제40조제4항 관련)****2.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신체검사**

검사항목	불합격 기준(최초검사)
가. 일반 결함	1) 신체 각 장기 및 각 부위의 악성종양 2) 중증인 고혈압증(수축기 혈압 180mmHg 이상이고, 확장기 혈압 110mmHg 이상인 경우) 3) 이 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법정 감염병 중 직접 접촉, 호흡기 등을 통하여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
나. 코 · 구강 · 인후 계통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언어장애나 호흡에 장애를 가져오는 코 · 구강 · 인후 · 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다. 피부 질환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위험성이 있는 만성 피부질환자 및 한센병 환자
라. 흉부 질환	1)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2) 활동성 폐결핵, 비결핵성 폐질환,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증 3) 만성 폐쇄성 폐질환
마. 순환기 계통	1) 심부전증 2)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분당 150회 이상)이나 기질성 부정맥 3) 심한 방실전도장애 4) 심한 동맥류 5) 유착성 심낭염 6) 폐성심 7)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바. 소화기 계통	1)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종대 2) 간경변증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만성 활동성 간염 3) 거대결장, 게실염, 회장염, 궤양성 대장염으로 난치인 경우
사. 생식이나 비뇨기 계통	1) 만성 신장염 2) 중증 요실금 3) 만성 신우염 4) 고도의 수신증이나 농신증 5) 활동성 신결핵이나 생식기 결핵 6) 고도의 요도협착 7) 진행성 신기능장애를 동반한 양측성 신결석 및 요관결석 8) 진행성 신기능장애를 동반한 만성신증후군
아. 내분비 계통	1) 중증의 갑상샘 기능 이상 2) 거인증이나 말단비대증 3) 애디슨병 4) 그 밖에 쿠싱증후군 등 뇌하수체의 이상에서 오는 질환 5) 중증인 당뇨병(식전 혈당 140 이상) 및 중증의 대사질환(통풍 등)

검사항목	불합격 기준(최초검사)
자. 혈액이나 조혈 계통	1) 혈우병 2)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3) 중증의 재생불능성 빈혈 4)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 5) 진성적혈구 과다증 6) 백혈병
차. 신경 계통	1) 다리 · 머리 · 척추 등 그 밖에 이상으로 앓아 있거나 걷지 못하는 경우 2)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에 따른 후유증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말초신경질환 4) 머리뼈 이상, 뇌 이상이나 뇌 순환장애로 인한 후유증(신경이나 신체증상)이 남아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뇌 및 척추종양, 뇌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6) 전신성 · 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7)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8) 만성 진행성 · 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 실조증, 다발성 경화증)
카. 사지	1) 손의 필기능력과 두 손의 악력이 없는 경우 2) 난치의 뼈 · 관절 질환이나 기형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한쪽 팔이나 한쪽 다리 이상을 쓸 수 없는 경우(운전업무에만 해당한다)
타. 귀	귀의 청력이 500Hz, 1000Hz, 2000Hz에서 측정하여 측정치의 산술평균이 두 귀 모두 40dB 이상인 경우
파. 눈	1) 두 눈의 나안 시력 중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5 이하인 경우(다만, 한쪽 눈의 시력이 0.7 이상이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3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두 눈의 교정시력 중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8 이하인 경우 (다만, 한쪽 눈의 교정시력이 1.0 이상이고 다른 쪽 눈의 교정시력이 0.5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시야의 협착이 1/3 이상인 경우 3)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 활동성, 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장애가 되는 질환 4) 안구 운동장애 및 안구진탕 5) 색각이상(색약 및 색맹)
하. 정신 계통	1)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지적장애 2)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성격 및 행동장애 3)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장애 4) 마약 · 대마 ·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알코올 관련 장애 등 5) 뇌전증 6) 수면장애(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수면발작, 봉우병, 수면 이상증 등)이나 공황장애

※ 신체검사는 의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의료진의 판정 결과에 따릅니다.

붙임9 신체검사 일반건강검진 항목

신체검사 일반건강검진 항목

목표질환	검사항목	단위	검사결과		
			정상A	정상B(경계)	질환의심
• 폐결핵 및 기타 흉부질환	• 흉부방사선촬영	-	정상	비활동성 폐결핵	정상 및 비활동성 폐결핵 이외의 자(사진불량, 미촬영 등은 제외)
• 고혈압	• 혈압 - 수축기 - 이완기	mmHg	120 미만 이며 80 미만	120-139 또는 80-89	140 이상 또는 90 이상
• 비만	• 키, 몸무게	BMI (kg/m ²)	18.5-24.9	25-29.9 18.5 미만	30 이상
	• 허리둘레	cm	남 90 미만 여 85 미만		남 90 이상 여 85 이상
• 빈혈	• 혈색소 - 남 - 여	g/dL	13.0-16.5 12.0-15.5	12.0-12.9 10.0-11.9	12.0 미만 10.0 미만
• 당뇨병	• 공복혈당	mg/dL	100 미만	100-125	126 이상
• 이상지질혈증	• 총콜레스테롤	mg/dL	200 미만	200-239	240 이상
	• HDL콜레스테롤	mg/dL	60 이상	40-59	40 미만
	• 중성지방 (트리글리세라이드)	mg/dL	150 미만	150-199	200 이상
	• LDL콜레스테롤	mg/dL	130 미만	130-159	160 이상
• 간장질환	• AST(SGOT)	U/L	40 이하	41-50	51 이상
	• ALT(SGPT)	U/L	35 이하	36-45	46 이상
	• γ -GTP - 남 - 여	U/L	11-63 8-35	64-77 36-45	78 이상 46 이상
	• 요단백		음성(-)	약양성(±)	양성(+1) 이상
• 신장질환	• 혈청크레아티닌	mg/dL	1.5 이하		1.5 초과
	• 신사구체여과율 (e-GFR)	mL/min/1.73m ²	60 이상		60 미만

목표질환	검사항목	단위	검사결과			
			우울증상이 없음	가벼운 우울증상	중간 정도 우울증 의심	심한 우울증 의심
• 우울증	• PHQ-9	점수	0~4	5~9	10~19	20~27

목표질환	검사항목	단위	검사결과	
			특이소견 없음	인지기능 저하 의심
• 인지기능장애	• KDSQ-C	점수	0~5	6~30

목표질환	검사항목	단위	검사결과	
			정상(통과)	질환의심(의뢰)
• 청력	• 귓속말 검사 (만66세 이상)	개수	양쪽 귀 모두 각각 불러준 6개 숫자 중 3개 이상을 정확히 따라할 경우 청력을 정상으로 판정	한쪽 귀라도 6개 숫자 중 3개 미만을 맞출 경우 난청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밀검사를 의뢰
	• 순음청력검사	dB	40dB 미만	40dB 이상

목표질환	검사항목	검사결과			
		정상 A	정상 B	주의	치료 필요
• 치아우식증	• 우식치아	없음	-	-	있음
	• 인접면 우식의심치아	없음	-	있음	-
	• 수복치아	없음	있음	-	-
	• 상실치아	없음	-	-	있음
• 치주질환	• 치은염증	없음	-	경증 있음	중증 있음
	• 치석	없음	-	경증 있음	중증 있음
	• 치면세균막검사	1점 미만	1~3점 미만	3점 이상	-

※ 신체검사는 의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의료진의 판정 결과에 따릅니다.

붙임10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응시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부산교통공사 사장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붙임11 채용시험 이의신청서

부산교통공사 채용시험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응시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e-mail)

이의신청 내용

육하원칙에 의해 자세하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하시고 채용시험과 관련한 이의신청 사항만 작성바랍니다.
- 문의 및 질의사항은 답변하지 않습니다.
- 회신은 이메일 또는 연락처를 통해 시행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기간에 따라 답변이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교통공사 사장 귀하